

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성,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법적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적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법률상담의 범위(안 제4조)
- 다. 상담실 운영(안 제5조)
- 라. 법률상담관 등(안 제6조)
- 마. 상담방법 등(안 제8조)
- 바. 상담처리 등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상담실의 명칭은 “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(위치) 상담실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사 안에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법률상담의 범위) 법률상담(이하 “상담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·민사·형사·가사사건에 관한 사항
2.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세,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

제5조(상담실 운영)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.

제6조(법률상담관 등) ① 상담실 운영,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, 법률상담관(이하 “상담관”이라 한다), 운영간사를 둔다.

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,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

담당주사가 된다.

③ 상담관은 변호사,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(상담관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
3.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제8조(상담방법 등)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서면,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.

② 상담은 매월 1회 실시한다. 다만,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상담처리 등) ① 방문상담은 상담 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. 다만,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.

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누설 금지)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기록유지)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(별지 제1호서식)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(별지 제2호서식)를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

[별지 제1호서식]

법률상담 접수처리부(제11조 관련)

[illegible]

[별지 제2호서식]

법률상담 기록카드(제11조 관련)

접 수 일		법률상담 기록카드						상 담 일			
사건구분 (v 표시)		☐ 민사(부동산,금전,손해배상,임대차,경매,기타) ☐ 행정(행정처분, 조세, 기타) ☐ 가사(혼인,호적,상속,기타) ☐ 형사(재산범죄,인격범죄,기타)									
신청인	성명	(인)				생년월일				성별	남 , 여
	주소										
	연락처					직업					
	구분	☐ 일반시민 ☐ 수급권자 ☐ 소년·소녀가장 ☐ 장애인 ☐ 기업체 ☐ 기타									
상담할 내용											
법률상담관 의견		☐ 상담으로 종결 ☐ 법률구조 안내 ☐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									
법률상담관						(인)					

상담할 내용

“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”

“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(주민등록번호 등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12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규정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 - 상담관 수당 지급 : $200,000\text{원} \times 2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4,800\text{천원}$

4. 작성자 :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7급 박 동 주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김 용 학
	담 당	김 대 운
	담당자	박 동 주 (480-6522)